

평창군주민투표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4. 7. 5(월) 평창군수(자치행정과장)
- 나. 회부일자 : 2004. 7. 20(화)
- 다. 상정일자 : 제11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4.7.2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가. 제안이유

- 주민투표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영주의 체류조건을 갖춘 자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함(안 제3조)
- 주민투표실시 청구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로 함(안 제5조)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및 의결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주민투표 대상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태영)

○ 본 조례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의 대상·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주민투표법(2004.1.29.법률 제7124호)의 제정으로 인하여 주민투표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내용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을 보면

- 20세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였으며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1

- 영주의 자격 : 법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한 강제퇴거대상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의 풍속이해 등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춘 자로서 거주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나.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자로서 기업투자 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국민의 고용창출에 기여한 자.

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라. 가족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자의 20세 미만의 자녀.

- 주민투표실시 청구주민의 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로 하였으며,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주민투표실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쟁점사항 중

- 먼저, 안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를 살펴보면, 주민투표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에서 5분의 1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군의 경우는 총수의 10분의 1로 정하고 있습니다.

10분의 1로 할 경우 지난 총선을 기준으로 한다면, 총 투표가능인원수 35,686명중 3,569명으로 이 인원이 과연 주민투표조례의 본 취지에 맞게 충분히 주민참여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참 조 : 【붙임 1】(강원도 시·군의회 주민투표조례안 의결현황)

- 다음, 안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제2항을 보면 심의회의 의장을 부군수가 맡도록 명문화하고 있는데, 이는 위원회의 공정성을 잃을 수 있는 부분으로써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 본 조례가 주민들의 주요 정책 참여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려는 의미있는 법안임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기타 법령의 형식이나 자구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 사 결 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 강원도 시·군의회 주민투표조례안 의결현황 1부.

【붙임 2】 : 평창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끝.

강원도 시·군의회 주민투표조례 제정 현황

시·군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수정의결 내용	비 고
	행자부 안	조례안		
강원도	1/16	1/20		원안의결
춘천시	1/11	1/11		심사보류 (다음회기)
원주시	1/12	1/13		원안의결
강릉시	1/11	1/11	○ 청구권자 수 1/11 → 1/13 ○ 위원수 7인 이상 → 9인이상	수정의결
동해시	1/9	1/13	○ 청구권자 수 1/13 → 1/20	수정의결
태백시	1/7	1/7	○	원안의결
속초시	1/8	1/8	○ 청구권자 수 1/8 → 1/13 ○ 위원수 7인 이상 → 9인이상 ○ 서명보정기간 10일 이내 → 15일 이내	수정의결
삼척시	1/8	1/8		원안의결
홍천군	1/8	1/8	○ 청구권자 수 1/8 → 1/15 ○ 심의회 위원의 2/3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자로 수정 ○ 심의회 의장은 위원중 호선으로 수정	수정의결
횡성군	1/7	1/7	○ 청구권자 수 1/7 → 1/10 ○ 심의회 위원의 2/3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자로 수정	수정의결
영월군	1/7	1/7	○ 청구권자 수 1/7 → 1/15	수정의결
정선군	1/7	1/7	○ 청구권자 수 1/7 → 1/10	수정의결
철원군	1/7	1/10	○ 심의회 의장은 위원중 호선으로 수정	수정의결
화천군	1/6	1/6		원안의결
양구군	1/6	1/10		원안의결
인제군	1/6	1/17		원안의결
고성군	1/6	1/16	○ 청구권자 수 1/16 → 1/10	수정의결
양양군	1/6	1/20		다음회기

평창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4년 7월 21일

제안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사유

- 안 제12조제2항은 심의회의 의장을 부군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 관행처럼 이뤄졌던 것으로 위원회운영의 자율성 및 탄력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라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며,
- 또한, 불필요하게 중복된 자구를 수정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골자

- 심의회의 의장을 "부군수"에서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수정.
(안 제12조 제2항)
- "평창군 지방의회"를 "의회"로, "지방의회 의원"을 "의원"으로 수정(안 제12조 제4항 제2호)

평창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평창군주민투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제2항중 “부군수가 된다”를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중 “평창군 지방의회”를 “의회”로, “지방의회 의원”을 “의원”
으로 수정한다.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①(생략) 1~4(생략) ②심의회 의 의장은 <u>부군수가 된다.</u> ③(생략) ④(생략) 1.(생략) 2. <u>평창군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u>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①(원안과 같음) 1~4(원안과 같음) ②----- <u>위원중에서 호선한다.</u> ③(원안과 같음) ④(원안과 같음) 1.(원안과 같음) 2. <u>의회가 추천하는 의원</u>